

거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	--------

제출연월일	2010. 11. .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제고로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촌사업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책무(안 제3조)
- 거창군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 구성(안 제4조)
- 위원회의 기능(안 제6조)
-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안 제9조)
 -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 후계인력육성, 여성농업인단체 육성지원
 - 영농현장 환경조성,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촉진 등
- 여성농업인 교육강화(안 제10조)
-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안 제11조)
-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안 제12조)
-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
- 귀농 여성농업인 및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2조, 제3조
- 「한부모가족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사안발생 시 추경예산으로 확보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0. 10. 25. ~ 2010. 11. 13.)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거창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한다.

② 여성농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는 위촉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나.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제9조(여성농업인 지원사업)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농업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업 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업인단체의 육성과 지원
4. 여성농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
5. 품목별 경영개선 및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6. 여성농업인을 위한 영농현장의 환경조성사업 추진
7. 여성농업인단체가 실시하는 상담 등 활동 지원
8. 여성농업인 지위향상과 사회참여의 촉진
9. 여성농업인과 도시소비자의 교류활동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여성농업인 교육강화)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6. 여성농업인의 평생학습을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정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2.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3.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4.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활동지원
5. 농업인 양성 평등을 위한 농정관련 각종 위원회의 여성농업인 위촉 확대
6.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제12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귀농 여성농업인 및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군수는 귀농 여성농업인 및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외국에서 이주한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외국에서 이주한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외국에서 이주한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실시
4. 귀농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술교육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 2010. 3.17] [법률 제10120호, 2010. 3.17,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농촌정책국 농촌사회여성팀), 02-500-1825~18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에 의하여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5조(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7>

1.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의 목표

2.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의 기본 방향

3. 다음 각 목의 핵심 정책과제

가. 농어업 경영능력 향상

나.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다.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라.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시책

4.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지원계획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에 따라 각각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각각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시·도의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8.4, 2008.2.29>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도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7조(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①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05.8.4, 2008.2.29>

②자문회의에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2008.2.29>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 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 인력의 육성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營農)·영어(營漁)작업의 환경 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어업 경영을 하려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 상담과 자금의 지원
- [전문개정 2010.3.17]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업정책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농어업인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 진작
 3.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생산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 상담
 4.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교양, 건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경영이나 정책 결정 또는 각종 교육 기회의 제공·지원 등을 할 때 여성농어업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어촌지역에서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3.17]

제1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29, 타법개정]

제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고충상담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농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3. 농어촌 아동에 대한 방과후 학습지도
4.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문화활동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02-2100-1754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10. 8.18] [법률 제10302호, 2010. 5.17,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 02-2075-8716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 7. (생략) [전문개정 2007.10.17]